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05
----------	-------

발의연월일 : 2018. 12. 24.

발의자 : 임재훈 · 김동철 · 신용현
이동섭 · 김수민 · 김관영
주승용 · 이찬열 · 하태경
김삼화 · 채이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러한 이유에서 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와 비교할 때 급식품질 및 관리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임. 또한 최근 부실급식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어 급식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유치원의 실태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영양교사 배치를 위해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기존에 유치원에 배치된 영양
사에 대한 고용유지 등을 위해 부칙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4조, 제7조
및 제15조제1항).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를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교사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유치원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를 배치한 경우 제4

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p>② (생 략)</p> <p>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p> <p>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p> <p>-----</p> <p>----- 「유아교육법」</p> <p>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② · ③ (생 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